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 통계조사관 및 조사관리지원 채용 공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통계조사관 및 조사관리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6.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구분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총57명)		근무기간	직무설명
		일반경쟁	장애제한 경쟁		
통계 조사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업무 전반	53명	3명	'26.7.1.~9.22.	[붙임2] 참고
조사 관리 지원	2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 관련 조사지원	1명	-	'26.7.1.~12.4.	

* ①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②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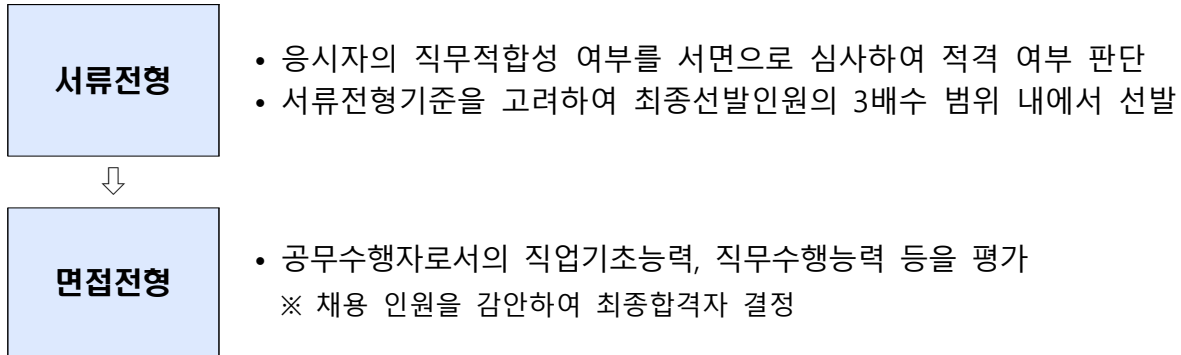
II 응시자격

구분	주요내용
학력/전공/성별	• 무관
연령	• 제한 없음
병역	• 무관
기타	•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 직무관련 활용 경험 및 자격보유자
장애인제한경쟁 응시자격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

Ⅲ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6.6.8.(월)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및 고용24 공고 등
지원서 접수	'26.6.8.(월) ~6.15.(월)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 고용24 e-채용마당을 통해 온라인 접수(우편, 방문, 메일 접수 불가) • 증빙서류 등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 당일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6.22.(월) 17:00 이후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면접전형	'26.6.25.(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6.6.26.(금) 17:00 이후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채용예정일	'26.7.1.(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조사관 - 고용노동통계조사 조사관리지원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최종합격자는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합격 여부 확인을 위해 e-채용마당을 통한 지원서 접수시 반드시 수험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고용2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구직관리]-[e채용마당지원서관리]에서 확인 가능)
- ※ 합격 여부와 관련하여 개별 연락은 하지 않으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IV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조사와 연관성이 있는 경력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ITQ 등) 보유자 ※ 자격증 배점 평정 시 급수·개수는 무관통계분야 관련 학교 교과목이나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 이수자(8시간 이상)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3% 부여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3% 부여 <p>※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p>

V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고용24 e-채용마당에서 접수**하고 증빙서류 등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접수 방법	접수 서류
고용24(work24.go.kr) e-채용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기반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자필서명 포함) 각 1부 ※ [붙임9] 서식 활용
면접심사 당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모집 분야와 관련된 컴퓨터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ITQ 등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입사지원서 상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VI

근무조건

- 보수수준 : 일급 78,560원, 식비 월 16만원 별도 지급(일할지급)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 휴게시간: 1일 1시간
- 계약기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업무전반: 근로계약 체결 시, '26.7.1.(수) ~ 9.22.(화)
 - 조사관리지원: 근로계약 체결 시, '26.7.1.(수) ~ 12.4.(금)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VII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동안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붙임10 서식),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및 구인자(서울고용노동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채용서류의 보관기관은 상기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담당자(전화 02-2004-7952)

【붙임2】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통계조사관, 조사보조/관리지원】

채용분야	통계 조사관	분류 체계	대분류	02. 경영·회계·사무
	조사 보조/관리 지원		중분류	01. 기획사무
			소분류	03. 마케팅
			세분류	03. 통계조사(능력단위 미개발 영역 포함)
기관 주요사업	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 지역의 사업장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고용보험 및 취업알선 사업과 근로감독, 산업안전 등 노동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임			
주요업무	01. 통계조사 준비 02. 통계조사 실시 03. 통계자료 처리			
주요업무 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조사 준비) 조사 대상에게 관련 협조 공문을 우편 발송하며, 사업체 정보나 조사내용에 대해 보안 조치를 유지함 ○ (통계조사 실시) 조사매뉴얼(조사요령서)를 기반으로 조사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설명과 적격 담당자(설문해당자) 확보, 조사 대상의 협조 및 동의를 구해 조사 항목에 대한 고용노동 통계 실시 ○ (통계자료 처리) 응답된 조사항목 자료 값에 기초하여 규정에 맞게 기록하고, 자료 분석을 위해 응답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전형방법	채용공고문 참고			
일반요건	연령	무관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 조사 용어에 대한 이해, 산업 및 직업 분류표 이해			
필요기술	○ 통계조사표에 대한 이해, 엑셀 활용 능력, 현장 방문조사 능력, 전화대응 능력, 자료 검토 능력, 입력시스템 사용 능력			
직무수행태도	○ 적극적인 학습의지, 업무처리에 대한 꼼꼼한 태도, 서비스마인드를 갖춘 태도, 매너를 준수하려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 객관적·균형적 태도, 조사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			
필요자격	없음			
우대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관리,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www.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 laborstat.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통계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